

한국어교원자격제도의 발전 방안¹

조항록

(대한민국, 상명대학교)

hrcho@smu.ac.kr

<Abstract>

A Scheme for developing the system of issuing the certificates of qualification for Korean language teaching. This paper deals with the system of issuing the certificates of qualification for Korean language teaching. In order to examine the issues concerning the system, the author reviews the current situation of teaching Korean as a second language, the issues and the problems concerning the system and comes up with alternative ideas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The researcher asserts that the institutionalization of issuing the certificates of qualification has a serious meaning in the history of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has a considerable social effect. He also maintains that in-depth discussions should be carried out in the policy-making area and in the theoretical domain, as the circumstances of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are changing rapidly. (Hang-rok Cho)

1. 문제의 제기

최근 국내외의 한국어 교육 환경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이

¹ 이 글은 한국어문교열기자협회가 발간하는 말과글 제 117 호(2008 년 겨울호)에 기고한 글을 학술적인 관점에서 재정리하고 보완한 것임을 밝힙니다.

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한국어 교육 현장이 전에 비해 괄목할만 성장을 보였다는 점이다. 비록 대양주와 같이 일부 침체된 지역이 있기는 하지만 전세계 한국어 교육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표현함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² 한국어 교육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데에는 몇몇 동인이 있다. 국내에서의 다문화 사회의 진전, 국외에서의 중국 내 경제성장과 외국 유학 분위기 고조, 한류와 한국 문화에의 관심의 고조, 외국인 고용허가제에서의 한국어 능력 시험 채택 등이 여러 요인이 거론되나 또 하나 관심 있게 봐야 하는 것이 한국어 교육의 제도화와 정책적 지원이다. 한국어 교육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의 역사는 그리 오래지 않은 상황에서³ 최근에 급격히 증가한 정부의 노력은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1997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2004년 12월에 입법이 완료되고 2005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국어기본법과 이에 따른 한국어교원자격제도의 시행, 국립국어원의 한국어진흥팀 신설과 한국국제교류재단의 한국어사업부 신설, 국립국어원의 세종학당의 추진, 교육과학기술부의 스터디 코리아 2005와 그 발전방안의 추진, 한국어국외보급기관

² 최근 한국어 교육 환경의 변화의 양상 및 한국어 교육 현장의 특성과 관련한 자세한 논의는 조항록(2008a) 참조.

³ 기본적으로 한국어 교육은 외국인과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 교육을 중심으로 교육 정책을 펼쳐온 한국 정부 내에서는 오랫동안 관심권 밖이었다. 최초의 정책으로 볼 수 있는 것은 1950년대 일본에서 있었던 재일동포 민족 교육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한국어 교육 정책이 실시된 것을 들 수 있고 이후에는 1977년에 있었던 재외국민의 교육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지원은 이보다 훨씬 늦은 1990년대에 들어서이다. 그것도 교육 차원에서의 지원이라기보다는 문화 예술의 국외 보급 차원에서 태동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 정부의 한국어 교육 정책에 대하여는 성광수(1995), 조항록(2005b)를 참조하기 바람.

협의회의 운영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여기에 국내에서 다문화 사회가 진전되면서 우리 사회의 소수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의 하나로 한국어 교육 지원 사업이 전개되고 있다.

한국 정부의 한국어 교육 정책을 논함에 있어 또 하나 특기할 만한 일은 외국인과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 정책의 다양성 만큼이나 참여하는 정부 부서도 다양해졌다는 점이다. 국외 한국어 교육과 관련해서는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교육과 학기술부가 참여하고 있으며, 국가 간의 교류 증진과 재외동포가 주 대상 주의 하나라는 점에서 외교통상부 산하의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재외동포재단이 참여하고 있고,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국외 보급이라는 차원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의 국립국어원이 참여하고 있다. 국내 한국어 교육과 관련해서는 참여 부서가 더욱 다양해져 위의 세 부서와 함께 다문화 사회의 진전과 관련을 갖는 법무부, 여성부, 농림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가 크든 작든 한국어 교육과 과년하여 정책을 개발하고 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개발 및 실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한국어 교육과 관련한 법적 제도적 기반의 구축이다. 여기에서 논하고자 하는 한국어교원자격제도는 바로 이러한 법적 제도적 기반 구축의 핵심에 위치하고 있다. 교육이 갖는 국가 사회적 기능과 전문성 요구라는 교육 고유의 성격을 고려할 때 국가가 책임을 지는 제도와 이를 뒷받침할 법적 기반의 구축은 중요하다. 특히 교육 현장에서 실제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육성, 자격 인증, 임용, 처우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교원 자격 제도의 성공적 실시는 교육의 발전을 위한 기본 요건이 된다. 지난 날 한국어 교육의 역사를 볼 때 한국어 교원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 어떠한 지원과 관리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다행히도 최근에 국가가 국어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한국어 교원

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시행령을 제정하고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일은 고무적이다. 비록 제도의 도입 이전에 국내외 한국어 교육은 너무나도 크고 다양하게 펼쳐져 있어 현장 요구를 다 수렴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는 있지만, 관련 법규(국어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의 제정에 한국어 교육 현장에 대한 고려가 존재하였고 시행 이후 관련 제도를 갖추어 적용하고 있음은 한국어 교육의 역사에서 갖는 의미가 크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법의 제정과 제도의 시행 이후 한국어 교육 현장에는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교육 전문성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교육의 내실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자격제도의 시행에 따른 교육 종사자의 사회적 보상이 주어질 공지를 갖도록 하고 있으며 아울러 이에 따른 책임도 느끼도록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 교원자격 제도는 시행 이전의 다양한 현장 특성과 법 적용 당사자의 다양한 요구 등을 충분히 포용하지 못한 한계를 가졌던 한계를 가졌던 만큼 많은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음도 엄연한 현실이다.⁴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의 배경이 되는 현 시대 한국어 교육의 특성을 살펴보고 한국어교원자격제도의 시행상의 문제점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한국어교원자격제도의 실시 과정에서 나타나는 미흡함을 인식하여 국어기본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어기본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서 나타난 현상 중의 하나는 기존의 다양한 현장 요구를 수렴하는 일이며 다른 하나는 동법이 한국어 교육을 선도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으로 볼 수 있다. 최근 국어기본법 시행령 개정 논의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관련 연구 영역의 중간 보고 자료인 조현성(2008) 참조.

2. 전환기의 한국어 교육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의 역사는 국내에서는 약 50년, 국외에서는 약 130년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공식적으로 1959년에 연세대학교에 한국어학당이 설립되면서 체계적으로 한국어 교육이 실시되었고 국외에서는 1880년에 일본의 동경외국어학교에서 대학 차원의 한국어 교육이 최초로 실시되었다. 서양의 경우를 보면 이보다 조금 늦어 1897년에 러시아의 페테스부르그왕립대학의 동방학연구소가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을 최초로 실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시작된 국내외 한국어 교육은 그 동안의 발전 과정에서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

첫째, 한국어 교육의 태동은 지역에 따라 달랐으나 대체로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내외에서 고루 빠른 도약의 양상을 보였고 최근에 제2차 도약이 한창 진행 중이다. 이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의 강화(1980년대), 한류 열풍(최근) 등 몇몇 요인에 기인한 것이었다. 이를 볼 때 한국어 교육의 도약은 교육 외적 환경에 큰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국내외의 한국어 교육은 공급 체계를 갖추고 수요자를 확보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기보다는 수요자의 확대가 공급 체계를 이끌어 왔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교육은 교육의 이념과 철학이 바탕에 깔리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교육의 목표가 설정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교육과정과 교수요목이 개발되어 교육 현장에서 실천된다. 효율적인 교육 실천을 위하여 교사가 양성되고 교수법과 교육 자료가 개발된다. 그러나 한국어 교육은 이러한 교육 실천의 일반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사회에서 교육 수요가 발생함으로써 교육 공급이 뒤따르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도약의 시기에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교육 수요를 목격한

많은 교육기관이 기반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참여하기도 하였다. 한국어 교육이 확대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도 새로이 편입되는 한국어 교육 현장을 살펴보면 과연 교육과정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교사가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교육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의심하게 하는 곳이 많다. 주변에 한국어 학습자가 폭 넓게 존재하기에 교육 실시를 통해 이러저러한 이익을 얻고자 한국어 교육에 참여하는 듯한 현장을 심심치 않게 목격하게 된다.

셋째, 최근의 경우는 다르지만, 국내의 경우 그 동안의 한국어 교육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뒤따라 왔다는 인식을 하게 한다. 수요가 공급을 창출했다는 위의 논의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국내 한국어 교육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 정책의 사각 지대에 놓여 있었음이 분명하다. 우리 나라의 교육이 헌법이 정하고 있는 교육 기본권, 즉 국민은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고 또 받을 권리가 있다는 법적 기반을 가지고 실시되어 오는 상황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은 당연히 정부 정책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기에 한국어 교육과 관련한 국가 표준, 즉 국가가 정하는 교육의 목표나 표준 교육과정 등이 존재하지 않고 교사의 자격에 대한 요건과 기준, 교사 육성 정책 등이 오랫동안 존재하지 않았다. 한국어 교육은 다양한 배경과 목적을 가진 민간 교육기관이 담당하여 왔고 교육과 관련한 제반 여건의 조성 및 요건의 확립도 민간 교육기관의 자율에 맡겨져 왔다. 1990년에 문화부가 설립되면서 한국어의 국외 보급을 정부가 할 일로 규정하게 되나 이는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에 연원을 두면서 국외의 한국어 교육 진흥을 목표로 삼았던 것이었다. 이후 우리 정부의 참여 폭이 커지기는 하였으나 다분히 한국어의 국외 진흥(현 문화체육관광부), 재외동포에 대한 민족교육(현 교육과학기술부), 국제 교류 증진의 차원(현 외교통상부)에

서 논의되었고 정책의 범위, 내용, 규모 역시 매우 제한적이었다. 2000년을 전후하여 국내외에서 한국어 교육의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한국어 교육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정부의 정책의 대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느낌이다. 특히 국내의 경우 결혼 이주여성 등 이주민의 증가, 외국 유학생의 증가 등으로 여러 부서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고 국외에서는 동포 중심에서 일반 현지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한국어 교육의 전체적인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과정이다.

이상의 특징을 볼 때 한국어 교육은 지금 분명히 전환점을 맞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규모에서 대규모로, 민간 중심에서 민간-정부 협력으로, 동포 중심에서 동포-외국인 중심으로, 학교 교육 중심에서 학교-사회 교육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이 대표적인 예이고 여기에 교육 내적 영역에서 전문성의 제고, 체계성의 확보 등이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3. 한국어교원자격제도의 실시의 성과와 현실적 한계

한국어 교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관리를 상징하는 것 중의 하나가 국어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에 포함된 한국어 교육 관련 조항이다.⁵ 이는 구체적으로 국가 주관의 한국어교원자격제도의 태동을 가져와 한국어 교육의 체계적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어기본법의 제정은 그 동안 여러 법률에 단편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국어 관련 법조문을 한 데 모으며 변화하는 국어 사용 환경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가운데 한국어의 국외 보급

⁵ 국어기본법은 총 5장 27조와 부칙 6조로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은 총 19조와 부칙 4조 및 별표 2로 구성되어 있다.

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명시함으로써 한국어 교육 정책의 법적 기반이 되고 있다.⁶ 국어기본법 제19조는 외국인과 재외동포를 위한 교육과정과 교재 개발 및 전문가 양성 사업을 정부가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재외동포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고자 하는 이에게 정부가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의 제13조에서는 한국어 교원의 자격 부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14조에서는 한국어 교육능력시험의 실시를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동법 시행령의 부칙 제2조에서는 한국어 교원 자격 부여와 관련한 경과조치를, 별표1에서는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필수 이수학점 및 이수시간을 제시하고 있고 별표2에서는 한국어교육능력시험 영역 및 검정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국어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이 정하고 이러한 내용은 한국어 교육과 관련하여 큰 의미를 갖는다. 조항록(2007)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정리하고 있다.

우선 총체적인 의의로서 국어기본법의 제정과 시행은 한국어의 국외 보급에 관한 법적 뒷받침을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국어기본법의 제정 배경에서 세계화, 정보화, 문화의 시대라는 시대 인식과 함께 국어의 국외 보급을 국어기본법 제정 제안의 4대 배경⁷ 중의 하나로 명시함으로써 한국어의 국외 보급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세부적인 의의의 측면에서 볼 때, 국어기본법과 동법 시행령 안에 담겨 있는 한국어 교육 관련 조항과 관련 부수적인 조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한된 영역이기는 하지만 한국어 교육 및 한

⁶ 국어기본법과 한국어 교육과의 관련성에 대하여는 조항록(2007) 참조.

⁷ 국어기본법 제정 제안에서는 ① 국어 정책의 수립, 시행, ②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 ③ 국어의 국외 보급, ④ 국어 정보화를 통하여 국어의 보전과 발전의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창조적인 사고력을 증진하고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명시함.

국어의 국외 보급을 촉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한국어 교원의 자격 요건을 정하고 국가가 이를 인증하는 한국어교원자격제도의 내용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한국어 교원의 국가 관리 및 지원이 가능해졌다.

실제로 문화관광부는 2006년 12월부터 국어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이 분야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는 자격 인증을 주 업무로 하나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한국어 교원 양성 체제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고 교사로서의 자격 요건을 검증함으로써 한국어 교원의 육성과 인증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가 끼치는 영향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국가 차원의 육성과 인증이 이루어지면서 그 결과는 한국어 교육 현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현장 교원의 충원, 충원된 교원의 역할 등은 결국 한국어 교육의 기반 구축에 기여하고 대외적 공신력을 높이는 의미도 갖는다.

이러한 의의를 갖는 한국어교원자격제도의 시행은 결국 한국어 교육 현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확인된다. 앞선 연구(조항록; 2007)에서 밝힌 내용이기도 하지만 한국어 교원자격제도의 시행 이후 한국어 교육 현장은 아직 자격증 소지자가 많지 않음에도 강사 임용 시 교원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한국어 교원 자격을 취득하고자 지원하는 이의 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합격률이 높아짐으로써 한국어교원자격제도는 전문 인력의 양성과 자질 함양에 기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래의 표는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에서 심의한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결과로서 특히 합격률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1> 한국어 교원 자격 심사 신청자 및 합격자 수⁸

심사 회차	심사신청자	합격자 수	합격률
2006년 제1차	1533	747	48.72%
2006년 제2차	218	122	55.96%
2007년 제1차	548	446	81.38%
2007년 제2차	242	193	79.75%
2008년 제1차	612	540	88.2%

이렇게 볼 때 한국어교원 자격 제도는 이제 정착 단계에 들어가 있으며 제도의 창출과 운영을 통한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의 국내외 한국어 교육 환경의 변화는 기존의 한국어 교원자격제도만으로는 현장 요구를 수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한국어 교육 관련 규정이 상당 부분 대학 내 한국어 교육과 같은 정규 교육 현장의 쟁점을 해결할 수는 있지만 다문화 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의 한국어 교육 현장이나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국외 한국어 교육 현장의 요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수렴될 수밖에 없다. 후자의 의상과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외면할 수 없는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최근 국내에서 다문화 사회가 급속하게 진전되면서 참여 부서의 수가 늘고 역할이 증대되면서

⁸ 국립국어원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음.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자에 대한 자격과 육성이 다시 제 각각 규정됨으로써 한국어 교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일관되고 통합된 관리 및 책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비록 아직까지 법제화를 통하여 시행을 하는 단계는 아니지만 이러한 움직임은 공식화되고 있다.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교육을 담당할 교원에 대하여는 교육과학기술부가 별도로 접근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교육을 담당할 사람에 대한 자격 인증을 또 다른 부서가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엄밀하게 말하면 한국어 교원은 아니지만 유사한 지위로 다문화사회전문가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⁹ 이러한 상황은 자칫 한국어를 담당하는 이들에 대한 복수 자격 시대의 가능성을 예고하는 것이며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의 영역에 대한 혼선을 가져올 가능성도 제기하는 것이다.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다양한 제도의 출현은 자연스러운 것이기는 하나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의 효과적 실시를 통한 이 분야 고유한 정체성의 확립 및 전문성 향상을 기대하는 이들에게는 하나이 논의거리로 대되고 있다는 것이 관심 있는 이들의 중론이다.¹⁰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와 관련한 이러한 논의는 결국 국어기본법이 현 시대의 다양한 한국어 교육 담당자의 유형과 역할 등을 충분히 포용하지 못한 바에도 원인이 있다. 결국 한국어 교육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국어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하거나 별도의 자격 제도의 도입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 과정에서 국가가 한국어 교원의 육성과 자격에 대하여 국가 차원의 통합 관리 체제를 지향할 것인지, 다

⁹ 이는 이미 법무부가 시행하고 있는 사회통합이수제도에 따른 것이다.

¹⁰ 이는 필자의 의견이 아닌 한국어교원자격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2008. 12. 12,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제기된 논의에 바탕을 둔 것이다.

원 체제를 지향할 것인지에 대한 심각한 논의가 요구된다고 본다.

4. 한국어교원자격제도의 개선 방안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어교원자격제도는 한국어 교육 발전의 역사에서 큰 의미를 갖는 제도이며 이의 사회적 파급 효과 역시 크다. 그러나 아직은 제도 시행의 초기 단계로서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으며 급변하는 한국어 교육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도 함께 안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어교원자격제도는 정책적 방향이나 관련 이론 등에 대한 깊은 논의가 있었다고 하나 **법 시행 이전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한국어 교육 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는 데 한계가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한국어 교육은 국가적 차원에서 법과 제도가 마련되고 정책적 방향이 정립되기 전에 이미 자생적으로 민간 영역에서 폭넓게 실시되고 있었다. 이러한 특수 상황을 고려하여 부칙에 경과 조항을 많이 두어 특수 상황을 고려하였으나 명문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법 시행 이전에 법이 규정하지 못하고 있는 다양한 현장에 대한 개념과 성격 규정 및 법 적용의 방안에 대하여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외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나 외국 현장에서 경력을 쌓은 경우 등에 대한 일관된 심사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점은 난제 중의 난제가 될 것이다.

둘째, 다음으로는 **법 시행 이후** 국내에서 다문화 사회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형성되는 한국어 교육 현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현행 한국어교원자격제도로는 이 분야를 지원하고 관리하기에 한계가 있는 대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또한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국외의 한국어 교육 현장에 대한 고려도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가 한국어 교원을 통합 관리 체제로 운용할 것인지, 다원 관리 체제로 운용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시기가 다가올 것이다. 한국어 교원의 통합 관리와 다원 관리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2> 한국어 교원의 통합 관리 체제와 다원 관리 체제의 비교

	통합관리체제	다원관리체제
주요내용	국어기본법과 동 시행령의 보완을 통해 한국어 교원의 육성, 자격 인증, 임용 등을 관리함	최근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사회통합이수제도, 다문화 가정 2세 한국어 교육 담당자에 대하여 해당 부서가 교원을 육성, 자격 인증, 임용 등을 관리함
장점	한국어 교육 주무 부서 책임 하에 한국어 교육의 전문성, 체계성 등을 국가가 담보하고, 부서 간의 한국어 교육 담당자 교류 등 범 교육계 형성 및 상호 협력 체제 구축이 가능함. 이와 함께 한국어 교육 발전을 위한 국가적 역량의 총체적 결집이 가능함	해당 부서의 현실적 요구에 따른 제도의 실시에 즉각적인 지원이 가능하고, 지금까지 해당 부서와의 관련 하에서 다소간 한국어 교육에 관여하였던 자들(민간 자원 봉사자 등)에 대한 보상이 수월함
단점	국어 기본법과 동 시행령의 개정을 요하는 바, 현 시점 각 부서의 현실적 요구를 즉	한국어 교육의 전문성, 교육 효과 등을 기대하기 어렵고 동일 분야에 대한 각기 다

각 수용하는 데 시간이 걸리게 됨	른 자격 인증 등으로 혼선을 초래하며 궁극적으로는 한국어 교육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재원의 투입, 역량의 결집에 한계가 있음
--------------------	---

셋째, 한국어 교원의 교육 현장 임용과 처우에 대한 대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교원 자격 제도는 일반적으로 교원의 육성, 자격 인증, 임용, 처우 등을 연계선상으로 진행해야 하나 한국어교원자격제도는 이 중에서 육성과 자격 인증만을 다루고 있다. 임용은 현장 교육기관의 기준과 권한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고 처우 역시 현장 교육기관의 고유 권한으로서 관련 규정이나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한국어교원자격제도의 성공적 실시를 위해서 임용 및 처우와 관련하여 깊은 논의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한국어교원자격제도의 실시와 함께 파생되는 시장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과 관리가 요구된다. 자격증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취득 및 활용과 관련한 종사자를 다수 발생시킨다. 이것이 대학 차원이든 일반 사설 기관의 차원이든 시장원리에 따라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나오게 된다. 한국어교원자격제도의 실시 이후 교원 자격 획득 요건을 갖춘 교육기관, 전공, 프로그램 등이 속속 개설되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아직 전문적인 교원을 양성할만한 역량과 요건을 갖춘 교육기관이나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 최근에 급격히 증가한 한국어 교육기관, 한국어 교육 관련 전공, 한국어 교원 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적당한 평가가 뒤따라야 제도의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성광수(1996), 한국어의 세계적 보급을 위한 언어정책 검토, 한국어 세계화의 제문제, 이중언어학회지 제13호, 이중언어학회.
- 조향록(2005a),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발달의 역사적 고찰1, 한국어 교육 제16권 1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조향록(2005b), 한국어교육정책론, 민현식, 조향록 외 편, 한국어 교육론 1, 서울: 한국문화사.
- 조향록(2007), 국어기본법과 한국어 교육 - 제정의 의의와 시행 이후 한국어 교육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 한국어교육 제18권 2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조향록(2008a), 한국어 교육 환경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대안의 모색, 한국어 교육 제19권 1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조향록(2008b), 이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의 실제와 과제, 사회언어학 제16권 1호, 한국사회언어학회.
- 조향록(2008c), 한국어교원자격제도의 시행과 개선 방안, 말과글 제117호(2008년 겨울), 한국어문교열기자협회.
- 조현성(2008),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 개선 방안 발제문, 한국어 교원자격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자료집,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조향록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종로구 홍지동 7번지 110-743

전화: (02)2287-5417

전자우편: hrcho@smu.ac.kr